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처벌 규정 신설〉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18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해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에 관한 처벌 조항 개요 ...	4
3.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고 있음.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14조의4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생성과 그 유통 및 이용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작·배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 제1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광고에 제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 개정안 제15조는 신설되는 제14조의4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4조의4(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광고에 제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 -----제14조의3, 제14조의4의-----.

2.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에 관한 처벌 조항

- 현행법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4조의2 제1항).
- 제14조의2는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 신설되었고,¹⁾ 2024년 10월 16일 일부 개정으로 각항 형량이 개정됨과 동시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²⁾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6호, 2020.3.24. 일부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2024.10.16. 일부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7086호 (2020.3.24. 신설)	제20459호 (2024.10.16. 개정)
제1항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u>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7086호 (2020.3.24. 신설)	제20459호 (2024.10.16. 개정)
	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u>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 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 에 처한다.
제4항		<u>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5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6년 2월 현재 법률 제20459호와 동일함

3. 검토의견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개정안 제14조의4제1항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14조의2제1항과 구별됨.

○ 이에 현행법 제14조의2제1항이 포섭하지 못하던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개정안이 규율하게 되므로 처벌 공백을 메우고 보호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존 인물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보호법익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대상을 ① 해당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특정 가능한 인물인 경우와 ②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위유형은 ①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제1항), ②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한 경우(제2항) 및 ③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제3항)가 있으므로,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위유형 피해대상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 (안 제14조의4제1항)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상영 (안 제14조의4제2항)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안 제14조의4제3항)
실존 인물인 경우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유형 ④	유형 ⑤	유형 ⑥

□ 첫째,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인물 또는 표현물의 대상이 실존 인물인 경우(유형 ①) 현행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유형 ②)는 현행법 제14조의2제2항이 적용되며,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유형 ③)는 현행법 제14조의2 제3항이 적용되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법에 부재하므로 이는 개정안으로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편집·합성 또는 가공’은 ‘제작’ 행위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고, 개정안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³⁾은 ‘제작’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정비를 검토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및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인물 또는 표현물의 대상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유형 ④, ⑤, ⑥), 개정안으로부터 보호받는 법익은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공의 성도덕 및 건전한 성적 풍속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개정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임.⁴⁾

○ 다만, ‘유형 ⑤’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43조⁵⁾ 음화반포등 규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체계 및 「형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조(목적)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는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5)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안 제14조의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안 제14조의4제1항을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의 규율체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계상 적정한지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안 제14조의4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을 구성요건을 전제하므로 성폭력처벌법의 보호법익 체계와의 정합성을 마찬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그 표현물이 음란에 해당하면 실존 인물의 존재여부와 무관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의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특정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인데 비해,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행위의 불법성이 같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정형이 동일한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더하여, 안 제1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광고에 제공한 자’ 부분은 광고를 위한 영상물을 공급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고를 실제로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0